

보도설명자료 (‘22. 10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과 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의
일부 규제개선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
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
(10.25일자 머니투데이 「정부, 대형마트 의무휴업 ‘평일’ 지정 허용」
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☐ 국조실, 산업부, 중기부 등은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은 유지하되
사실상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을 주중 평일까지 확대하는 유통법
개정을 추진 중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
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※ 현행 유통산업발전법(제12조의2 제3항) 상으로도 지자체장은 이해당사자
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지정할 수 있음

- 정부와 대·중소유통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하여,
중소유통 역량강화 지원과 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일부 규제
개선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,
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 대·중소유통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
‘대·중소유통 상생협의회’가 발족한 바 있음

- 정부는 특정한 시한을 두지 않고 업계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
합의를 바탕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

- 현재 동 협의회에서는 업계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
중에 있는 상황이며,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한 내용이
결정된 바 없음

- ☐ 아울러, 의무휴업 관련 규제개선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
향후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상생방안 마련 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
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

※ 문의 : 유통물류과 정상용 과장(044-203-4380) / 이수연 사무관(4381)